



현안 자료 (2016. 10.27)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엇이 문제인가?

---

발행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의 : 02) 712-7292 spark946@hanmail.net

담당 : 조승현 평화군축팀장(010-2440-5749)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임박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연말에?

정부가 4년 전 체결 직전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일 간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일제가 물러난 지 70여년 만에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연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9월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고, 한 장관은 국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한다.(연합뉴스, 2016. 9. 11) 이어 윤병세 외교장관은 9월 18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본 외무상의 제안에 “그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동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한겨레 2016. 9. 2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결정권을 가진 최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 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조성 작업을 해온 것이다.

---

이 글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식지 『평화누리 통일누리』 통권 159호에 기고한 글이다. (2016. 10. 27)

지난 10월 20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지난 6월 처음으로 실시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협정 체결 요구가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6월의 훈련은 현재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한일 간의 정보 공유가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2014년 12월말에 체결되었고, 한일 위안부 야합이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도 어수선한 2016년 12월말 즈음에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 약정이 있는데 왜 협정까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란 군사정보를 제공받는 수령국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는 것은 현행 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었다는 점, 형식상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을 경유하여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명시한 점 때문일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 직전 중단되었던 협정(안)에 비추어 볼 때, 보호 대상으로 되는 '정보'의 범주는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제2조(정의) 가'항(군사비밀정보'))로 확대될 것이다. 이 협정은 물론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미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미일, 한미 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관련 협정과 함께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되고 보호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우선적인 이유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AN/TPY-2)나 우리의 이지스 체계 등이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면 중국·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탐지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제안(2014. 3. 14)은 이를 입증한다. 일본이 안보

법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정보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7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실무자 회의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력 특히 정보 전력에서 북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817 로드맵’(2006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4월 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즉시 확인하였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북 핵 및 미사일에 관한 한국의 정보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을 생각하면 지금 굳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할 이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중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설령 유사시 한미가 탐지하지 못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확보해 한국에 제공해 준다고 해도 이 정보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기도 하다.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정책국장은 9월 29일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12월 10일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말했다.

일본 군대는 이미 1963년 미쓰야 작전계획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 파병을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최근에는 방위개념을 ‘동적 방위력’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법을 제 개정함으로써 해외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핵심 대상이 한반도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이제 안보법제 제 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안보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오만하고 불순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나라를 치러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요구와, 일본 공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반도를 침략했던 갑오농민전쟁 당시 일본의 요구를 연상케 한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기술협력의 길도 열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좌절되었던 이 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에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

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형식적으로는 쌍방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일본의 미사일 기술 능력이 미국과의 SM-3 BLOCK II A 공동개발 등에서 보듯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우리의 정보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다.

##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대기 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통칭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것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때의 ‘모든 분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0월 22~23일, 한미일 해상수색·구조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는 2011년 한일 국방장관이 “PKO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

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9월 26일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이 서명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중요영향사태'나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가 되면 미국에 대해 식량과 물은 물론 탄약과 급유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앞선 8월 26일, 일본과 호주의 국방장관도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움직임은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을 다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일본군 간 평시, 유사시 군수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특히 유사 시 한일 연합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아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해야**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이처럼 정보,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한미일 MD 공동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상차단작전훈련 등 작전 분야 등 모든 분야와 범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이 전쟁 수행의 핵심기능인 정보와 작전, 군수 분야에서 협정의 수준에 이

른다는 것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일 위안부 야합→사드 한국 배치 결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법 제개정 등에 부응하여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에 복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동북아 맹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일본까지 끌어들이어 대북 고립 압살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북 중립의 대립을 구조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동북아에서 무한 핵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과 대일 군사적 종속까지 초래하여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사드 한국 배치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군사적 조치들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절실한 이유다.

# 누구를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인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국회 승인을 거쳐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는 한미일 3각 엠디(MD) 및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고리로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게 하려는 한미일 당국의 군사적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미일은 군사적 이익을 누리겠지만 한국은 불이익만 당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을 미일 MD에 끌어들이려는 것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는 미일 엠디(MD)작전으로, 북중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이를 대신 요격해 주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일 엠디(MD) 체계를 연동시키고, 이를 미국의 동북아 엠디(MD) 체계의 하위 체계로 결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연적이다”며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로 국한된 기관 간 약정”(김관진, 2014. 6. 18. 국회 대정부 질의)으로 ‘한미

---

이 글은 2014년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 발표 직후에 작성한 글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식지 『평화누리 통일누리』 통권 136호(2014. 7. 9)에 기고한 글이다.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MD)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남한엔 무용지물**

반면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남한의 중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체결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일과 역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정보 제공과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부담만 지게될 뿐이다.

### **한국이 미일 MD 작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두고 국방부가 배치를 용인한 주한미군 사드(THAAD)도 주된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서라기보다는 사드의 레이더 체계인 고성능 엑스밴드레이더(AN/TPY-2)로 상해, 북경, 대련 등 중국 동·북부 미사일기지에서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식별하는데 있다. 또한 사드의 요격미사일로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데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한국은 고성능엑스밴드레이더(AN/TPY-2)에서 수집된 정보는 물론 그린파인 지상레이더와 SPY-1D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수집한 북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모두 일본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의 관영언론 '신화통신'이 남한에 사드 배치 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이 미일 엠디(MD)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대중 관계가 파탄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디딤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다른 목적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에 있다.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는 '태평양 드래곤'과 같은 한미일 연합 엠디(MD) 훈련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전력이 주축이 된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해상차단훈련 등을 전면화하여 한일군사관계를 작전·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

장함으로써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일호 (준)군사동맹과 결합하여 아·태지역의 대북·대중 포위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한일군사동맹 구축은 한일 간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높인다. 엠디(MD)뿐 아니라 미군 보호, 해상수송로 보호, 기뢰 제거, 유엔 다국적군과 PKO 활동 등에서 자위대와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한국군이 자위대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말 남수단 파견 한국군 부대가 현지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빌려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탄약을 빌린 최초 국가로 만든 사례는 한일 간 집단자위권 행사의 단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미군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상 요격 등 한미일 간 집단자위권 행사는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에 의거한 집단방위로서 유엔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한 유엔헌장 위배다.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열어주게 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한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참하는 대가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침략)

이라는, 우리 국가와 민족에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대중 포위에 동참함으로써 중국과 적대하고 중국 탄도미사일의 공격 대상으로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듯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국가와 민족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반드시 국회와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협상 과정과 약정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소위 ‘기관(국방부) 간 약정’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국회와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밀실처리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고노 담화’를 부정한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을 보고서도 정작 과거사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대일 군사적 종속의 길을 다시 가려고 한다면 국민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